안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·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의 안 번 호	798

제출연월일 : 1999. 8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사유

○ '99. 7. 1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통행금지구역·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의무화되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가. 청소년유해요인 등이 밀집되어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지역 등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을 정하였고(안 제2조)

나.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제한 구역내에 청소년의 통행금지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시간을 정하였으며(안 제3조)

다. 지정절차로서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·토론회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·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 (안 제4조)

□ 조례제정(안) : 붙임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(예상) : 26,090천원

○ 도 로 도 색 비 : 5,000원 × 2,500m = 12,500,000원

○ 초 소 설 치 비 : 2,500,000원 × 3개소 = 7,500,000원

○ 표지판설치비 : 400,000원 × 3개소 × 2개 = 2,400,000원

○ 순찰함설치비 : 30,000원 × 3개소 × 6개 = 540,000원

○ 전 화 설 치 비 : 250,000원 × 3개소 × 1대 = 750,000원

○ 무전기구입비 : 400,000원 × 3개소 × 2대 = 2,400,000원

□ 사전예고기간 : '99. 7. 23 ~ '99. 8. 11(20일)

□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「청소년 통행금지·제한구역」 시행 및 관리·운영지침
(경기도 청소년 82590-432('99.4.28)

안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·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(이하 "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"이라 한다)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정기준 및 대상)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1. 청소년통행금지구역 :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,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2. 청소년통행제한구역 :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, 청소년 유해매체물, 약물등의 판매·대여·유통·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,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
제3조(통행금지 및 제한시간)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. 다만, 부모,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모,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제4조(지정절차) ①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·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·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을 시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정해제)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) ①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별표1과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별표2와 같이 청소년통행

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설치하되, 해당구역의 면적등을 감안하여야 한다.

제7조(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) ①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②시장은 청소년이 통행금지구역등으로 통행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통행금지구역등에서 퇴거케 하기 위하여 청소년선도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협조체제 유지)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·학교·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